

영등포구의회
제20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7. 5. 16 .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崔 光 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19호로 2017년 5월 1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따라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세 자진납부 유도 및 모범납세자를 우대하고, 수수료 징수액을 개정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 감면조항 신설 (안 제5조제1항제12호)
- 나.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중 식품환경 영업허가(휴·폐업) 사실증명, 의료기간약국(휴·폐업)사실증명의 징수금액 폐지 (안 제3조 관련 별표)
-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수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각기 다른 지방자치단체 모범납세자 지원 관련 조례의 통일된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서울특별시의 모범 납세자 지원제도 개선 방침에 따라, 2016년 8월 서울특별시에서 자치구 수수료 징수 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각 자치구에 시달되었으며, 이에 본 개정조례안 내용에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 감면조항 신설 내용을 반영하였음.
- 또한, 구민창안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계획(2017)에 따라 ‘규제 개혁으로 행복한 영등포 만들기’ 지정제안 공모제 선정 및 장기간 경기 침체에 따른 구민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식품환경 영업허가(휴·폐업)사실증명, 의료기간 약국(휴·폐업)사실증명 수수료 징수 금액을 폐지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음.
-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감면 조항 신설과, 식품환경영업허가(휴·폐업)사실증명 및 의료

기간 약국(휴·폐업)사실증명 수수료 징수 금액 폐지로 감소되는 수입은 각각 연간 1백7십7만6천원과 7만7천원으로 우리구 재정수입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감면에 따른 수입 감소는 다음 회계연도에 서울특별시에서 각 자치구에 재정보전 할 예정임.

- 따라서, 모범납세자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 면제 혜택 제공은 우리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는 모범납세자에 대한 예우 및 모범납세자 스스로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일반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 고취에도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식품환경 영업허가(휴·폐업)사실증명, 의료기간 약국(휴·폐업)사실증명 수수료 징수 금액 폐지는 경기 침체에 따른 구민의 부담을 해소하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4.1.>